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 한신 의원 외 12명
- 나. 의안번호 : 제2593호
- 다. 발의일자 : 2025년 3월 31일
- 라.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 2. 제 안 이 유

- 「수의사법」에 따라 반려동물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 사항이 되었으므로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표시하는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 가.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 「수의사법」

## 5. 검토 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sup>1)</sup>」를 폐지하는 것임.

2022년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의 고지 및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제20조)되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제30조) 및 동물진료업 정지(제33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41조)를 하고 있는바,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게시하는 경우 그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는 현행 상위법 규정과 상충하고 있고 유명무실함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음.

### 「수의사법」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수술등중대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비 차이로 인해 동물소유자가 느끼는 불신이 증가한다는 점과 과잉 진료로 과도한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다는 민원 등에 따라 진료비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21.5.20. 제정)